

영유아 교육기관
교사를 위한 일반직무교육
정리노트



학습 목차

차시	차시명	주요 훈련내용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1.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이해 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제
2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1.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이해 2.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제
3	실종·유괴 예방교육 - 실종아동 이해 및 예방교육 실태	1. 실종·유괴 아동 이해 2. 실종·유괴 예방교육의 실제
4	실종·유괴 예방교육 - 실종 신고 및 대처방법	1. 실종·유괴 예방교육의 실제 2. 실종·유괴 신고 및 실종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5	재난대비안전교육 - 지진	1. 재난대비안전교육 - 지진의 이해 2. 재난대비안전교육 - 지진의 실제
6	재난대비안전교육 - 화재, 태풍	1. 재난대비안전교육 - 화재, 태풍의 이해 2. 재난대비안전교육 - 화재, 태풍의 실제
7	재난대비안전교육 - 강풍, 대설·한파, 폭염, 황사·미세먼지	1. 재난대비안전교육 - 강풍, 대설·한파, 폭염, 황사·미세먼지의 이해 2. 재난대비안전교육 - 강풍, 대설·한파, 폭염, 황사·미세먼지의 실제
8	재난대비안전교육 - 소방시설 안전관리	1. 소화설비 2. 경보설비 3. 피난설비 4. 기타설비
9	응급처치교육 - 심폐소생술	1. 심폐소생술 2. 질식, 경련, 영아돌연사증후군
10	응급처치교육 - 할퀴, 당김, 놀림 등	1. 응급처치교육 - 할퀴, 당김, 놀림 등의 이해 2. 응급처치교육 - 할퀴, 당김, 놀림 등의 실제
진행단계평가(중간고사)		선다형 10문제 출제

학습 목차

차시	차시명	주요 훈련내용
11	시설안전교육	1. 시설안전교육에 대한 이해 2. 시설안전교육에 대한 실제
12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1.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이해 2.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제
13	영유아감염병 예방교육	1. 영유아감염병 예방교육의 이해 2. 영유아감염병 예방교육의 실제
14	교통안전교육 및 통학차량 동승자 교육	1. 교통안전교육의 이해 2. 교통안전교육의 실제
15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1.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의 이해 2.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의 실제
16	건강영양교육	1. 건강영양교육의 이해 2. 건강영양교육의 실제
17	CCTV 안전교육	1. CCTV 안전교육의 이해 2. CCTV 안전교육의 실제
18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교육	1. 통학차량 관리 및 통학노선 점검 2. 승하차 안전 3. 교통안전교육 기준 4. 사고사례와 예방 수칙
19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및 인성 덕목	1. 인성교육의 이해 2. 영유아 교사의 역할 및 인성덕목
20	인성교육의 실제	1. 영유아기의 인성 2. 영유아 인성교육
최종평가(기말고사)		선다형 45문항, 단답형 15문항

**중점 학습내용!**

- 1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이해
- 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제

1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이해

1. 아동학대 이해

(1)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① 아동학대 유형별 구체적 예시

- 신체학대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정서학대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이해

- 성학대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 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유기 및 방임

물리적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교육적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중점 학습내용!

- 1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이해
- 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제

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제

1. 아동학대 신고

(1) 아동학대 신고 및 개입과정

- ① 학대 의심 징후 발견 : 일반적으로 학대상처는 일반상처와는 다르게 다치기 어려운 곳에서 발견됨
 - 신체학대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처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 도구 모양 그대로 나타난 상처 • 화상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긴 화상 • 골절 : 시간차 골절, 복합·나선형 골절 • 절상 : 입, 입술, 잇몸, 눈, 외음부 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귀가 및 부모에 대해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등

- 정서학대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 말더듬 같은 언어장애 • 미숙한 정서반응 • 집중력 결여 •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공격적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수면장애, 놀이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해, 자살시도

- 성학대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지표 : 성병감염, 임신, 걷거나 앉기 어려움 • 생식기 증거 : 정액, 처녀막, 질 내 상처 • 항문 증후 : 괄약근 손상, 항문주변 멍이나 찰과상, 회음부 동통 • 구강 증후 : 입천장 손상, 인두 임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지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조숙한 성지식, 타인, 동물, 장난감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비 성적 행동지표 : 수면장애, 충동성, 주의집중장애, 방화/동물에 잔혹함(남아), 섭식장애, 비행, 가출, 자살시도, 우울증 등

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제

- 방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배고픔, 열악한 위생상태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 의학적 치료와 치과치료의 불이행 • 지속적 피로, 불안정감 • 수업 중 조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을 구걸하거나 흠칫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늦게 귀가함 • 잦은 결석, 만성 지각

(2)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 ① 아동학대 신고를 할 때는 큰일이 난 것처럼 하여 아동이 불안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행동하면서 신고 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하고 지지함
- ②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 반응해주면서 학대를 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인지시켜줌
- ③ 지나친 반응 및 신체 접촉은 아동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음
- ④ 학대행위 의심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함
- ⑤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음
- ⑥ 진술의 오염되지 않도록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함
- ⑦ 만일 성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는 것이 좋음

2. 아동학대 예방

(1) 영유아에게 시행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 ①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계획 수립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관련 교육실시 시기 및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기준 준수
- ② 아동복지법 시행령
 - 실시주기(총 시간) :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 교육내용 : 내 몸의 소중함, 내 몸의 정확한 명칭,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 교육방법 :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시청각 교육, 사례 분석

**중점 학습내용!**

- 1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이해
- 2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제

1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이해

1. 아동성폭력의 위험성 및 개념

(1) 개념

① 성폭력

-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 전화, 성기 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
- 강간, 윤간, 강도 강간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 전화, 성기 노출, 아동 성추행, 아내 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② 아동성폭력

- 강간성인 및 아동이 자기보호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범죄 행위
-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범죄행위
- '아동 성학대'라는 용어와 혼용 사용
- 아동을 대상으로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가해자의 성적 욕구 충족 및 성적 착취 등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
- 접촉하는 행위와 접촉하지 않는 행위로 구분



중점 학습내용!

- 1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이해
- 2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제

2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제

1.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아동은?

(1) 이야기를 잘하는 수다쟁이 아동 : 이야기를 잘하려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① 어떤 이야기라도 괜찮으며, 선생님이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들게함
- ② 아이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지지와 공감을 하고 칭찬해 줌
- ③ 선생님의 감정도 표현하고, 화나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④ 따뜻함을 충분히 준 후 분명한 체계를 줌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1) 아동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침

- ①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침
- ②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전화하도록 연습 시킴
- ③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것을 사준다거나 할 때 거절할 수 있도록 지도
- ④ 낯선 어른이 도와 달라고 할 때 거절할 수 있음을 알려줌
- ⑤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표현하도록 함
- ⑥ 다른 친구의 신체 부위는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지도함

(2) 일상에서 어른이 해야 할 것을 알고 교육 시 활용함

- ① 저 연령의 아동 : 신체구조와 차이를 자연스럽게 깨우쳐 줌
- ② 이름과 집 전화번호를 알고 비상시 연락번호를 외우게 함
- ③ 외출 시 부모(또는 어른)에게 먼저 허락을 받도록 함
- ④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람 ≠ '아는 사람' 또는 '안전한 사람']임을 알려줌
- ⑤ '믿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줌
- ⑥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져서 혼란을 느낀다면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라고 일러 줌
- ⑦ 다른 친구의 신체부위는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지도함
- ⑧ 집에 혼자 있을 때 : 문을 잠그고, 부모가 허락한 친척이나 친구가 아니면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가르침
- ⑨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의 위치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제

(3)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익히도록 함

- ①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발견 후 바로 신고해야 함
- ② 경찰 신고를 대비하여 피해 당시의 시각, 피해 장소, 피해 유형, 피해 당시의 옷, 가해자의 특성 등 메모
- ③ 증거물은 종이봉투에 넣어 수사기관에 제출
- ④ 부모에게 연락하고 의견을 모아 대응 방법 모색
- ⑤ 전문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⑥ 해바라기센터 : 의료적인 처치 외에 증거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

(4) 아동성폭력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해 인지함

- ①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 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3. 성폭력 사건의 신고

(1) 성폭력 사건 신고

- ① 신고의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의해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체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 2에 따라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③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점 학습내용!**

- 1 실종·유괴 아동 이해
- 2 실종·유괴 예방교육의 실제

1

실종·유괴 아동 이해

1. 개념 및 필요성

(1) 실종아동과 관련한 정의

- ① 약취·유인 : 약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두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 ② 유기 :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
- ③ 가출 :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는 않은 것
- ④ 단순 미아 :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실종아동의 유형

- ① 미아 : 공공장소 등에서 아동이 길을 잃은 경우
- ② 유기 : 금전, 성적 만족, 양육 등의 목적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
- ③ 가출 : 아동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
- ④ 사고 : 사고로 인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 ⑤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버린 경우

**중점 학습내용!**

- 1 실증·유괴 아동 이해
- 2 실증·유괴 예방교육의 실제

2

실증·유괴 예방교육의 실제

1. 영유아 실증·유괴 예방교육의 내용

(1) 미아상황 대처방법 교육

- ① 미아 상황을 가정하고 반복 연습(훈련)
- ② 영유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 선별
- ③ 미아 상황에서의 3가지 수칙 내재화

(2) 미아상황의 3가지 수칙

- ① 제자리에 멈추고 기다리기
- ② 이름과 연락처 생각하기
- ③ 주위에 도움 요청하기

(3) 유의사항

- ① 미아 상황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 조성은 금물
- ② 미아 상황으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
- ③ 미아 상황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죄책감은 상황 대처에 역효과
- ④ 어렵פות한 추측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접근해야 함



2

실증·유괴 예방교육의 실제

(4) 아동 실증·유괴 유형별 교육방법

- ① 호기심 유발형 : 영유아가 좋아할만한 것(간식, 경품추첨 등)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유인하며,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영유아의 심리를 이용하여 경계심이 풀어지는 때를 노림
 - 모르는 사람이 건네주는 물건을 절대 받지 말고, 먼저 보호자의 허락을 받도록 지도
 - 영유아가 먹을거리 등을 받아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지도
 - 반드시 꼭 필요한 물건은 보호자(부모)가 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도

- ② 지인 사칭형 : 부모님과 잘 아는 사이, 이웃 등으로 가장하여 친근감 있게 접근하며 이름을 부르거나 말을 걸며 안심시킨 후 영유아가 경계를 늦추는 심리를 이용함
 - 이름을 알고 있거나 얼굴을 아는 사람도 반드시 보호자에게 먼저 허락을 받도록 지도
 - 아무리 급한 경우라도 먼저 보호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와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믿을 수 있는 사람(친인척)의 연락처를 암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

- ③ 동정심 유발형 : 아픈 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길을 물어보며 영유아의 동정심에 호소하여 동정심과 착한 행동을 칭찬받고 싶은 보상심리를 이용함
 - 예의바르고 착한 것보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도록 지도
 - 직접 도와주지 않고, 도움을 요청한 어른에게 다른 어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친절을 베푸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지도
 - 정상적인 어른은 절대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지도

- ④ 동정심 유발형 : 저항하는 영유아를 물리적인 힘으로 억지로 유괴함
 - 누군가 강제로 데려가려 하면 밝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



중점 학습내용!

- 1 실종·유괴 예방교육의 실제
- 2 실종·유괴 신고 및 실종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1

실종·유괴 예방교육의 실제

1. 미아 예방교육

(1) 미아 발생 시 대처법

① 미아 발견 시 대처법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신고
-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이의 부모를 기다림
- 아이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봄
- 아이의 의복, 신발, 소지품 등을 확인해 봄
- 안내방송이나 주위에 도움 요청
- 아이를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인계 시 발견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

(2) 미아 예방법

①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안전수칙

-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고,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않기
- 실종아동 예방용품 활용
- 자녀에 관한 정보 기억하기
-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 알아두기
- 정기적으로 자녀사진을 찍어두고 소지하고 다니기

② 아동을 위한 안전수칙

-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침
- 밖에 나갈 때는 누구랑 어디에 가는지 꼭 이야기 하도록 가르침
-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시킴



1

실증·유괴 예방교육의 실제

2. 유괴 예방교육

(1) 유인전략

① 호기심 유발형

- "똑똑하게 생겼구나."라며 칭찬을 하면서 유인
- "맛있는 것 사줄게." 과자를 사주면서 유인
- "게임기 갖고 싶지 않니?"와 같이 선물이나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유인
- "연예인 OO만나게 해 줄게.", "연예인으로 키워줄게."와 같이 연예인 기획사나 TV 출연을 사칭하여 유인
- 낯선 사람이 주는 선물이나 호의는 받지 않도록 하며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음

② 지인 사칭형

- "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어. 빨리 가 보자."와 같이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짓말로 유인
- "엄마 친구란다. 엄마가 나에게 너를 데려오라고 하셨어." 등 부모님의 친구, 친척이라고 사칭하여 유인
-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든지 따라가지 않으며 가족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한 뒤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음

③ 동정심 유발형

- "이 물건을 차로 옮기는 것 좀 도와줄래?"와 같이 물건을 들어주거나 주워달라고 하면서 유인
- "OO병원 어디 있는 줄 아니?" 등 길을 잘 모른다고 같이 가서 알려달라고 하면서 유인
- "지금 탐문수색 중인데 나와 잠깐 가서 범인 잡는 것 좀 도와줄래?"와 같이 경찰이나 수사관을 가장하여 유인
- 이상한 느낌이 드는 사람과는 절대 같이 동행하지 않으며 심부름을 잊은 것이 있어 갔다 와야 한다면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음

④ 강제 유괴형

- 낯선 사람이 계속 따라와서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
- 혼자 놀고 있는 경우 낯선 사람이 다가와 데려가는 경우
- 위협과 공포심을 이용하여 무조건 강제로 끌고 가는 경우
- 술이나 수면제 등이 들어 있는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
- 낯선 사람이 따라오거나 말을 걸 때에 절대 따라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슈퍼나 문방구 등의 가까운 곳에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함

1

실종·유괴 예방교육의 실제

(2) 유괴예방법

경찰청(www.safe182.or.kr)과 실종아동전문기관(www.missingchild.or.kr)에서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제시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 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유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 필요

①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안전수칙

- 자녀의 친구나 그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미리 알아둠
- 자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써 둠
- 부모의 허락 없이는 낯선 차를 타거나 아는 사람의 차라도 타지 않도록 교육시킴
- 혼자 있게 하지 않음
- 낯선 차가 접근하면 차량 근처로 가지 않게 한다.
- 누군가 억지로 데려가려 하면 "안돼요! 싫어요!" 외치게 함
-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봄
- 자녀들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수칙들을 반복해서 연습시킴

② 아동을 위한 안전수칙

- 낯선 사람이 이름을 부르며 잘 아는 척 행동을 할 경우 대꾸하지 않고 신속히 피하도록 함
- 낯선 사람이 돈, 과자, 음료수 등을 줄 경우 받지 않음
-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볼 경우 알려만 주고 따라가지 않음
- 낯선 사람을 만난 곳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멀 경우에는 가까운 안전한 곳으로 가서 집으로 전화를 함
- 낯선 사람이 강제로 데려가려 하면 크게 소리치며 발버둥침
-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따라가지 말고 부모님께 먼저 말씀 드린 후 허락을 받도록 함
- 외출 시 약속시간을 지키도록 함
- 값비싼 옷을 입거나 고가의 소지품을 삼가도록 함
- 으스스한 골목이나 공터, 어린이 놀이터 등은 유괴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혼자 가지 않도록 함
- 밝고 환한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되 저녁 늦게까지 외부에서 놀지 않도록 함
- 등·하교 시에 친구와 함께 안전한 길로 다님
-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문과 창문을 꼭 잠그고 있도록 함
- 집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찾아오면 조용히 없는 척 함
- 만약 말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바쁘시니 나중에 오시라고 전함
-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부모님께 이야기 함



중점 학습내용!

- 1 실종·유괴 예방교육의 실제
- 2 실종·유괴 신고 및 실종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2

실종·유괴 신고 및 실종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1. 실종신고 방법

- (1) 전화신고 : 실종아동 등 신고, 국번 없이 112
- (2) 전화상담 : 실종아동 등 상담, 국번 없이 182
- (3) 문자상담 : 내용 및 사진을 입력 후 전송 #0182
- (4) 방문신고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중점 학습내용!**

- 1 재난대비안전교육 - 지진의 이해
- 2 재난대비안전교육 - 지진의 실제

1

재난대비안전교육 - 지진의 이해

1. 지진의 정의

- (1) 지진 :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2) 진원 : 지진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발생한 지점
- (3) 진앙
 - ① 진원에서 지표면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지점
 - ②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표 → 지진 발생 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



중점 학습내용!

- 1 재난대비안전교육 - 지진의 이해
- 2 재난대비안전교육 - 지진의 실제

2

재난대비안전교육 - 지진의 실제

1. 어린이집 지진 발생 시 대응 순서

(1) 1단계 : 지진발생감지 및 알림

- ① 지진 첫 감지자 : 큰 소리로 지진 발생을 알리고, 지휘명령총괄(원장)에게 연락

(2) 2단계 : 안전확보

- ① 대피자들(영유아, 보육교직원 등) : 현재 위치에 가깝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보호
- ② 차단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 : 가스, 전기를 신속히 차단(2차 피해방지)
- ③ 출입구 확보를 담당하는 보육교직원 : 대피 가능한 출입구(문, 창문)를 개방

(3) 3단계 : 피난장소로 이동

- ① 각 반 보육교사 :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비상연락처 감지
- ② 원장 : 보육교직원의 비상연락처 지참
- ③ 구급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 : 비상용품(비상기기, 비상 약품, 물 등)을 신속히 챙김
- ④ 지진이 멈출 경우 : 피난경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피난장소로 이동(큰 공원, 광장 등)

(4) 4단계 : 부상자 확인 및 응급처치

- ① 보육교사 : 영유아 부상자 확인
- ② 원장 :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부상자 확인
- ③ 부상자가 있을 경우 : 응급처치를 하고 의료기관 등에 연락

(5) 5단계 : 재해정보 확인/보호자 연락 후 인계

- ① 재난정보 담당 보육교사 : 비상기기(라디오, 핸드폰 등)로 재난방송을 통해 지진상황을 확인
- ② 보육교사
 -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안전하게 인계
 -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 피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시도



2. 장소에 따른 대응 행동

(1) 어린이집 : 책상 아래로 피함

- ① 책상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
- ② 흔들림이 멈추면 운동장으로 대피
- ③ 복도에서는 창문과 떨어져 이동

(2) 고층 건물 : 실내에서 떨어지는 물건 주의

- ① 고층일수록 흔들림이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음

(3) 백화점, 마트 : 장바구니로 머리 보호

- ①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함
- ②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피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함

(4) 극장, 경기장 : 자리에서 몸을 보호

- 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며 자리에 머물러 있음
- ② 한 곳으로 갑자기 몰리면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안내에 따라 대피함

(5) 엘리베이터 : 즉시 내림

- ①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신속하게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함
- ②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 :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로 구조를 요청함

(6) 전철 : 손잡이를 꼭 잡음

- ① 손잡이나 기둥, 선반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함
- ② 서둘러 출구로 뛰어나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내에 따라 행동함

(7) 산, 바다 : 안전한 곳으로 대피

- ① 산이나 급한 경사지 근처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떨어지는 물체에 주의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함
- ② 지진해일 특보 발령 :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함

**중점 학습내용!**

- 1 재난대비안전교육 - 화재, 태풍의 이해
- 2 재난대비안전교육 - 화재, 태풍의 실제

1

재난대비안전교육 - 화재, 태풍의 이해

1. 현황 및 실태

(1) 실태

- ① 6개월에 1회 이상
- ② 연간 6시간 이상
- ③ 300만 원 이하 과태료

2. 재난의 분류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 분류

- ①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 ② 인적 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주는 것
- ③ 사회적 재난 :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



중점 학습내용!

- 1 재난대비안전교육 - 화재, 태풍의 이해
- 2 재난대비안전교육 - 화재, 태풍의 실제

2

재난대비안전교육 - 화재, 태풍의 실제

1. 화재

(1) 화재 시 대응 절차

① 화재 발생 알리기 신고

-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알림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름
- 전화로 119에 신고하여 신속히 소방차가 출동하게 함
- 화재 신고순서 : 신고자 이름 → 화재가 난 곳의 주소 → 신고자 전화번호 → 화재 원인

② 대피하기

- 주변 출입구를 확인함
- 건물에서 화재 발생 : 비상구와 피난계단을 찾아서 대피함
- 승강기 : 전원이 꺼지거나 연기의 이동경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용금지
- 건물의 비상구 위치를 모르면 유도등 표시방향을 따라 감
-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대피함
- 연기가 많이 찬 곳 : 자세를 낮춰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짧게 하며 대피함
- 물건을 챙기려고 지체하지 말고 바로 대피함
- 문의 손잡이가 뜨거우면 확인하고 열어야 함(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음)
- 건물에 고립되어 있을 때 : 가능한 대응을 하고 구조를 기다림

③ 초기진화시도

- 5분 내 초기 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소화기, 소화전을 사용하여 초기 진화를 시도함
- 전기와 가스 밸브를 잠금
- 화재의 원인에 맞는 진화방법을 시도함
- 무리한 진화 시도 보다는 빠른 대피가 인명보호에 도움이 됨



2

재난대비안전교육 - 화재, 태풍의 실제

④ 인원 확인하기

- 대피 후 모이기로 한 장소에서 인원을 확인함
- 못 나온 사람이 있을 경우 :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를 요청함

⑤ 의료조치하기

- 대피 도중 다치거나 연기로 인한 손상이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 경우 : 소방대원에게 도움을 청함

⑥ 사후처리하기

- 사건보고서를 작성함
- 소방서나 경찰서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 보험회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다친 아동이 있는 경우 : 보호자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취함
- 화재에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함

2. 태풍

(1) 태풍에 대한 이해

- ① 태풍 :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부 최대 풍속이 1초당 17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기상현상

(2) 태풍 대처요령

① 태풍 예보 시

- 고층 건물에서 생활하는 경우 :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파손에 대비함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알아 둠
- 하천 근처나 침수가 예상되는 곳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김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현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 둠
- 생필품은 미리 준비함
-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함

**중점 학습내용!**

- 1 재난대비안전교육 - 강풍, 대설·한파, 폭염, 황사·미세먼지의 이해
- 2 재난대비안전교육 - 강풍, 대설·한파, 폭염, 황사·미세먼지의 실제

1

재난대비안전교육 - 강풍, 대설·한파, 폭염, 황사·미세먼지의 이해**1. 각 재난에 대한 개념**

- (1) 강풍 :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이 1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2) 폭염 : 기상재해 중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재난으로 매우 심한 더위, 폭서·불볕더위와 같은 뜻
 - ① 폭염주의보 : 낮 최고기온이 최고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정도 지속될 때
 - ② 폭염경보 :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 (3) 황사·미세먼지
 - ① 황사
 -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 유발
 - 계절에 상관없이(여름 제외) 영향을 주고 있음
 - ② 미세먼지
 - 겨울철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파생됨
 -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위협

**중점 학습내용!**

- 1 재난대비안전교육 - 강풍, 대설·한파, 폭염, 황사·미세먼지의 이해
- 2 재난대비안전교육 - 강풍, 대설·한파, 폭염, 황사·미세먼지의 실제

2

재난대비안전교육 - 강풍, 대설·한파, 폭염, 황사·미세먼지의 실제

1. 폭염 대비 요령

(1)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하기

- ① 얇은 옷을 헐렁하게 입고, 챙이 넓은 모자나 선크림을 발라 자외선을 차단
- ② 실내에서 대체활동(과한 운동은 자제)
- ③ 보육실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커튼이나 천으로 직사광선 차단
- ④ 통학차량 : 그늘진 곳에 주차
- ⑤ 갑자기 찬물로 샤워 하지 않음

(2) 위생적인 생활

- ① 물은 끓이고, 음식은 익혀 먹음
- ②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은 버림
- ③ 찬 음식을 자주 먹지 않음
- ④ 평소 손을 자주 씻는 등 위생 습관을 철저

(3) 냉방기기를 바르게 사용

- ① 냉방기기 :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실내 온도 : 26~28℃)
- ② 장시간 에어컨 가동 : 환기를 자주 시킴
- ③ 에어컨, 선풍기 : 일정시간 가동 후 꺼지도록 예약
- ④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 환기 유도
- ⑤ 냉방이 안 되는 실내 : 햇볕을 차단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

(4) 건강상태 살피기

- ① 더위와 관련된 질병이 있는지 건강상태 살피기
- ② 수분을 규칙적으로 섭취
- ③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 응급조치 후 병원
- ④ 장기적으로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 보육시간 단축 및 휴원 조치



2. 황사·미세먼지 대비 요령

(1) 어린이집의 고농도 단계별 대응 요령

① 고농도 예보 단계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실내활동으로 대체여부 검토 등)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② 고농도 발생 단계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실외활동 자제(실내활동으로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
-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③ 주의보 단계

- 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 등·하원 시간 조정 등 실시 :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내활동으로 대체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④ 경보 단계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⑤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단계

-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감기·안질 등 환자는 휴식 또는 조기귀가

⑥ 조치결과 등 보고 단계

- 시·도 환경부서 :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환경부에 취합·보고(3, 9월)
- 어린이집 : 시·군·구 담당부서에 보고(경보발령 후 7일 이내)

**중점 학습내용!**

- 1 소화설비
- 2 경보설비
- 3 피난설비
- 4 기타설비

1

소화설비

1. 소화기

(1) 소화기 보관 방법

- ① 직사광선을 피함
- ② 습기가 적고 건조한 곳에 둠
- ③ 소화기 표지판 부착
- ④ 영유아 보행 시 충돌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

(2) 소화기 관리 방법

- ① 제조일자, 제조 회사명, 연락처 등이 표기되어 있는지, 국가검정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
- ② 녹이 슬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봄
- ③ 약제가 굳지는 않았는지 확인함
- ④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함
- ⑤ 소화기 점검표와 함께 비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함

(3) 압력계 점검 방법

- ① 소화기 압력계 : 용기 내부가 압축가스로 채워진 상태
- ② 압력계의 지시침 확인
 - 정상상태 : 녹색 부분
 - 이상과압상태 : 적색 부분
 - 압력 미만상태 : 흰색 또는 노란색 부분
- ③ 소화약제 중량은 소화기 몸체(약제 중량, 소화기 총 중량)에 표기되어 있음



1

소화설비

2.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스프링클러헤드에서 자동으로 열을 감지한 후 소화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설비

(1) 점검 및 관리

- ① 배관 및 헤드에 변형, 손상, 탈락, 부식, 누설이 있는지 확인
- ② 유수검지장치 및 테스트 밸브의 압력은 적정한지 확인
- ③ 동결우려가 있는 곳에 보온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
- ④ 헤드 주위에 살수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
- ⑤ 수원의 저수량은 확보되었는지 확인
- ⑥ 가압 송수장치(펌프)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

(2) 어린이집 규모가 4층과 5층인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

(3)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수도와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는 수계소화설비



중점 학습내용!

- 1 소화설비
- 2 경보설비
- 3 피난설비
- 4 기타설비

2

경보설비

1. 단독경비형감지기

(1) 정의 : 화재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알리는 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

- (1) 정의 : 화재 발생 시 발신기의 스위치를 눌러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 피난 또는 화재의 초기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설비
- (2) 종류 :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3

피난설비

1. 비상출구(비상대피로)

(1) 요건

- ① 비상 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해야 함
- ② 문은 대피 방향으로 열리도록 함
- ③ 문은 잘 열려야 함
- ④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함
- ⑤ 강화 통유리인 경우 비상구 규격에 맞아야 함
- ⑥ 개방에 방해되는 커튼, 거울, 교구장, 짐 등을 놓아서 비상출구를 막지 않도록 함
- ⑦ 적체물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피가 어려우며, 적체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음



Chapter

09

응급처치교육 - 심폐소생술



중점 학습내용!

- 1 심폐소생술
- 2 질식, 경련, 영아돌연사증후군

1

심폐소생술

1. 기본소생술

(1) 소아 심정지에서의 생존사슬

① 소아 심정지에서 예방의 중요성

- 익사는 5세 미만, 불의의 사망 원인 중 2번째로 높은 빈도 차지
- 익사를 예방하려면 수영장 주위 울타리 공사, 수영 시 반드시 구명장비 착용

② 신속한 신고 및 심폐소생술

- '신속한 심폐술'이 우선
- 심정지 발생 이후 심폐소생술의 시작이 빠를수록 자발순환 회복 ▲
-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일반인 심폐소생술
 - 병원 밖 심정지 소아의 자발순환 회복률 ▲
 - 생존 퇴원 : 신경학적 결과가 더 양호



1

심폐소생술

(2) 일반인을 위한 소아 기본소생술

① 구조자와 환자의 안전

- 구조자와 환자가 있는 지역의 안전 확인
- 심폐소생술 : 감염성 질환의 전파 위험이 있으나, 실제 구조자의 위험은 매우 낮음

② 반응의 확인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가를 먼저 평가
- 의식 없는 환자가 숨을 헐떡이거나 호흡이 없는 경우 : 심폐소생술 필요
-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등을 신속하게 확인

③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 자극에 반응이 없고 목격자가 한 명인 경우
 - 주위에 소리를 쳐서 도움 요청
 - 119 신고와 자동제세동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
-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경우
 - 발견자가 즉시 119에 구조요청
 - 환자에 대해 알리고 자동제세동기 요청하고,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처치 진행
- 두 명 이상의 목격자가 있는 경우
 - 첫 번째 구조자 : 즉시 심폐소생술 시작
 - 다른 목격자 : 응급의료체계에 신고하면서 자동제세동기 준비
- 구조자가 혼자이며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 피드백 후 작성



1

심폐소생술

④ 환자의 호흡 확인

- 규칙적으로 숨을 쉬는 경우

- 심폐소생술 불필요
- 외상 증거가 없다면 옆으로 눕는 회복자세를 취해 줌
- 119 도착 때까지 반복적으로 호흡상태 확인

-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 기도가 더 많이 열리고 호흡이 최적화되는 자세를 스스로 취함
→ 더 편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면 그대로 유지하게 함

-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거나 헐떡이는 숨(심정지 호흡)만 있는 경우

- 심폐소생술 시작
- 헐떡이는 숨을 쉬는 것을 정상 호흡을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 심폐소생술 시작

⑤ 가슴압박

- 심정지 상태에서의 가슴압박 : 주요 장기로 혈류 유지, 자발순환회복 가능성 ▲

-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상태 : 즉시 30번의 가슴압박

- 적절한 가슴압박

- 100~120회의 속도
- 흉곽 전후 직경(가슴 두께)의 1/3 깊이 또는 영아에서 4cm, 소아에서 4~5cm의 깊이를 압박
-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에 눕혀서 실시

- 영아의 가슴압박

- 혼자 소생술을 할 때 : 두 손가락으로 젖꼭지 연결선 바로 아래의 흉골 압박
- 칼돌기와 갈비뼈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
- 환자 흉곽 전후 직경의 1/3 깊이(또는 4cm 깊이)로 압박



1

심폐소생술

- 소아의 가슴압박

- 흉골 아래 1/2 부분을, 한 손 혹은 두 손의 손꿈치를 이용하여 환자 흉곽 전후 직경의 적어도 1/3 깊이(약 4-5cm) 압박
- 돌기와 갈비뼈를 누르지 않음
- 압박 때마다 적절한 깊이가 유지되어야 함
- 가슴압박 후에는 가슴이 정상위치로 다시 이완되게 함
- 매 가슴압박 후, 흉부가 완전히 이완되게 함
- 구조자들이 지쳤을 때 흉부이완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음
- 응급의료체계에서 구조자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쉴 때까지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주기를 반복
- 영아와 소아 소생술의 경우 : 가슴압박 + 인공호흡
- 병원 내 및 병원 밖 영아 및 소아 심폐소생술 시행자 : 가슴압박 + 인공호흡
- 구조자가 인공호흡에 대한 훈련이 되어있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 : 가슴압박

⑥ 기도 열기와 인공호흡

- 1인 구조자의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 30:2

- 기도를 여는 방법 : 외상 여부에 관계없이 머리 젖히고 턱 들기 방법 이용

- 인공호흡 방법

- 영아 : 입-입 또는 입-코 인공호흡
- 소아 : 입-입 인공호흡
- 호흡을 불어넣을 때 가슴이 올라오는 것 확인
- 각 호흡은 1초에 걸쳐 실시
- 가슴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 : 머리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호흡이 새지 않게 막고 인공호흡 시도
- 머리 기울기 정도를 조절하여 최상의 기도 유지와 효과적인 인공호흡이 가능한 위치를 찾음
- 영아 인공호흡 시 입과 코를 한꺼번에 막기 어려운 경우 : 입-입 또는 입-코 인공호흡 실시
- 입-입 인공호흡은 '코'를 막고 입-코 인공호흡은 '입'을 막음

⑦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 2회 인공호흡 > 즉시 30회 가슴압박

- 1명 구조자의 경우 : 30(가슴압박):2(인공호흡)의 비율로 5번의 주기 시행 : 2분 소요

- 2명 구조자의 경우 : 5번의 주기 후에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역할을 교대 시행



중점 학습내용!

- 1 심폐소생술
- 2 질식, 경련, 영아돌연사증후군

2

질식, 경련, 영아돌연사증후군

1. 질식 -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

(1) 기도가 막힌 경우의 응급처치 방법

① 기도 폐쇄가 경미할 경우

- 기침을 하거나 소리를 낼 수 있음
- 스스로 기침을 해서 막힌 것을 뱉게 함
- 증상이 심해지지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함

② 기도 폐쇄가 심할 경우 : 기침을 할 수도 없고 소리도 내지 못함

③ 1세 이상 소아, 기도 폐쇄가 심할 경우 : 가로막 아래 복부밀어내기(하임리히법)를 이물이 나올 때까지 또는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시행

④ 영아의 경우

- 5회의 등 두드리기 + 5회의 가슴 밀어내기 이물이 나올 때까지 또는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시행
- 복부 밀어내기 방법 사용 → 내부 장기 손상의 위험이 높아 금지

⑤ 환자의 반응이 없거나 이물 제거 시술 도중 반응이 없어진 경우 : 심폐소생술 시작

⑥ 가슴 압박 후 호흡을 하기 전에 입안에 이물이 보이면 손가락을 사용하여 꺼냄

⑦ 두 번의 인공호흡 후 이물이 제거될 때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과정 반복

**중점 학습내용!**

- 1 응급처치교육 - 할킴, 당김, 놀림 등의 이해
- 2 응급처치교육 - 할킴, 당김, 놀림 등의 실제

1

응급처치교육 - 할킴, 당김, 놀림 등의 이해

1. 응급처치의 기본원칙

- (1)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 자신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함
- (2) 언제나 신속, 침착, 질서 있게 대처해야 함
- (3) 여러 환자가 있는 경우 긴급한 환자부터 처치해야 함
- (4) 이송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함
- (5) 치료가 끝날 때까지 가급적 음식물을 주지 말아야 함
- (6) 부상자 운반 시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이송하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중점 학습내용!

- 1 응급처치교육 - 할킴, 당김, 놀림 등의 이해
- 2 응급처치교육 - 할킴, 당김, 놀림 등의 실제

2

응급처치교육 - 할킴, 당김, 놀림 등의 실제

1. 피부의구조와 상처의 종류

- (1) 찰과상 : 마찰에 의하여 피부의 표면에 입는 상처
- (2) 타박상 : 외부의 힘(충돌 등)이 피부의 넓은 면에 가해질 때 생기는 상처
- (3) 절상 : 끝이 예리한 물체(칼, 유리, 파편 등)에 의해 피부가 잘려져 입는 상처
- (4) 자상 : 끝이 예리한 물체(못, 창 등)에 피부가 찔려서 입는 상처
- (5) 열상 : 외부의 자극에 의해 피부가 찢어져 입는 상처

2. 화상

(1) 응급처치 방법

- ① 화상 부위가 손이나 발일 경우 : 천이나 거즈를 끼워서 서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 깨끗한 붕대로 손과 발을 느슨하게 하고 병원에 방문
- ② 물 혹은 불에 데인 경우 : 옷을 벗기거나 환부 부위의 옷을 자르는 행동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하도록 함
- ③ 물집이 생긴 경우 : 터뜨리지 말고, 물집이라도 절대 벗겨 내지 않음
- ④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 등의 자극성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음
- ⑤ 민간요법은 2차 감염을 일으키거나 창상 감염을 일으켜 심각한 합병증 초래
- ⑥ 주의사항
 - 물집은 벗기거나 터뜨리지 않음
 - 영유아는 화상부위를 찬물에 10분 이상 담그지 않음(저체온증 우려)
 - 로션, 된장, 간장, 소주 등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음
 -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함



3. 물림

(1) 물림(동물, 벌레 등)

① 응급처치 방법 - 동물에 물렸을 때

-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음
-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진술과 신원을 기록
- 개방성 상처인 경우 : 즉시 응급실 방문
- 일반 상처보다 감염률이 약 8~9배 높음
-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상처가 깊을 가능성이 크고 타액에 세균이 많아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상처의 깊이 등을 진단함
- 병원에 방문하여 동물의 종류와 정황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함
- 동물의 주인이 있을 경우 : 동물 병력을 확인하여 의사에게 설명하고 사후 사건 처리를 위해 전화번호 수령
- 야생 동물인 경우 : 물린 장소, 동물의 특징 등을 자세히 이야기함

② 응급처치 방법 - 벌에 쏘였을 때

- 침이 박혀 있을 경우
 - 신용카드 모서리로 살살 긁어 침 제거
 - 침 끝에 남아 있는 독이 몸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어 손으로 잡아당기지 않음
- 이차 감염 예방 : 흐르는 물로 상처를 깨끗이 닦아주고, 연고를 발라 줌
- 쏘인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한 후에 냉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킴
-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얼굴과 몸, 기도가 부어올라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음
 - 쏘인 후 아이의 증상 변화를 살펴야 함



중점 학습내용!

- 1 시설안전교육에 대한 이해
- 2 시설안전교육에 대한 실제

1

시설안전교육에 대한 이해

1. 개념 및 필요성

(1) 시설안전관리의 목적

- ① 잠재 위험요인 조기 발견
- ② 위험요인 신속하게 제거
- ③ 사고·재해 미연에 방지

(2) 안전관리자

- ①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감독
- ② 사고 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인식
- ③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태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1) 안전관리제도 주요 내용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설치자)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함
-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음

②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주체)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보험한도액은 사망 시 8,000만 원 이상), 중대사고 발생보고 등

**중점 학습내용!**

- 1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이해
- 2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제

1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이해

1. 개념 및 필요성

(1) 약물의 정의

- 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 내에서 생리적, 화학적 특성에 의해 유기체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물질을 통칭하는 말
- ② 의학적으로 인체의 질병을 치료, 예방,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이는 의약품을 의미
- ③ 약물은 의존성, 내성, 금단증상을 모두 가져오는 모든 물질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

(2)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오용)

- ① 스스로 자신의 질병과 치료법을 정하여 약을 사용할 때
- ② 필요하지 않은 약을 사용할 때
- ③ 의사 등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약을 사용할 때
- ④ 약에 대한 광고만 믿고 약을 사용할 때

(3) 약물의 불법적인 사용(남용) :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으로 환각제와 같이 몸에 해로운 약물(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4) 약물 오·남용의 문제 : 의존성, 내성, 금단증상

**중점 학습내용!**

- 1 영유아감염병 예방교육의 이해
- 2 영유아감염병 예방교육의 실제

1

영유아감염병 예방교육의 이해

1. 필요성과 개념

(1) 감염병의 정의

① 감염병과 전염병

- 감염(Infection)

-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한 뒤 증식하여 세포와 조직에 병리 변화를 일으켜 증상과 징후를 나타내거나 면역 반응을 야기하는 상태
- 감염병 : 사람에게 침입한 특정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 혹은 병원체가 생산하는 독성 물질(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

- 전염(Contagion)

- 병원체가 하나의 숙주로부터 다른 숙주의 조직에 정착하여 계속 증식하는 것
- 어떤 개체로부터 별도의 개체로 질환이 확대되는 것

② 병원체와 병원소

- 병원체(Pathogen) : 감염병의 1차 원인으로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진균류 등의 미생물과 원충생물, 기생충 등의 각종 기생생물이 모두 포함됨
- 병원소(Reservoir) : 병원체가 생존하고 증식하면서 감수성 있는 숙주(Host)에 전파시킬 수 있는 생태적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 동물, 곤충, 흙, 물 등을 말함

③ 면역과 감수성

- 면역 : 몸 속으로 들어온 어떤 병원체에 대항하는 항체를 생산하여 독소를 중화하거나 병원체를 죽여서 다음에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된 상태
- 감수성(Susceptibility) : 병 등에 걸리기 쉽다는 의미로 특정 병원체에 대한 저항(면역)이 없어 감염병 발생이 가능한 상태



1

영유아감염병 예방교육의 이해

(2) 유행과 유행병

① 풍토병(Endemic Disease)

- 병원체가 지역사회 혹은 집단에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일정 수준의 감염을 유지하는 감염병
- 예 : 한 지역에서 장티푸스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이 지역사회에서 장티푸스는 풍토병이라고 할 수 있음

② 유행병(Epidemic Disease)

- 한 지역사회나 집단에 평소에 나타나던 수준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태의 질병
- 유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 발생 수준과 비교하여 결정

③ 대유행성(Pandemic)

- 질병 유행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최소한 두 국가 이상의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에 유행되는 경우

2. 감염병의 발생인자 및 생성단계

(1) 감염병 발생요인

① 병원체

- 옥외 환경에서의 생존 능력
- 증식 능력
- 숙주로의 침입 및 감염 능력
-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② 숙주

- 인체의 구조적
- 기능적 방어기전
- 생물학적 요인
- 형태요인
- 체질적 요인

③ 환경

- 생물학적 환경
- 물리화학적 환경
- 사회적 환경



중점 학습내용!

- 1 영유아감염병 예방교육의 이해
- 2 영유아감염병 예방교육의 실제

2

영유아감염병 예방교육의 실제

1. 질병대처

(1) 영유아의 상태에 따른 대응

- ① 어린이집에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안 좋은 경우
 - 가능한 격리된 방에 아픈 영유아를 건강한 영유아와 격리함
 - 한 명의 어린이집 교사가 전담하여 아픈 영유아를 돌봄
 - 아픈 영유아가 가지고 놀 장난감은 구별하며 사용 후에는 소독함
 -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함
- ② 아프지만 어린이집에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경우
 - 영유아가 자주 손을 씻게 도와줌
 - 어린이집 교사도 자주 손을 씻음
 - 아픈 영유아가 함께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함
 - 놀이시설 및 장난감을 자주 소독함
- ③ 격리가 필요한 경우
 - 발열과 함께 구역질, 구토 등이 있을 때
 - 열과 함께 몸에 발진이 돋았을 때
 - 설사(두 번 이상 변을 보았다거나 평소 배변습관에서 변화를 보인 경우)
 - 최근 24시간 내 두 번 이상의 구토가 있었을 경우
 - 피부나 눈에 황달이 관찰된 경우
 - 영유아가 계속 보채고 달래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울 경우



중점 학습내용!

- ① 교통안전교육의 이해
- ② 교통안전교육의 실제

1

교통안전교육의 이해

1. 교통안전교육 개념 및 필요성

(1) 안전교육

- ①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태도, 지식, 기능을 익히게 하는 것
- ②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망,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

(2) 교통안전교육의 내용 : 지식교육, 태도교육, 기능교육

(3) 교통안전교육의 방향

- ① 연령과 성별, 개인차 고려
- ② 지속적, 반복적
- ③ 학습자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예를 들
- ④ 실천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 형성에 목표 설정
- ⑤ 개인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
- ⑥ 학습자들의 거주공간 특성을 고려
- ⑦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원리 이해



중점 학습내용!

- 1 교통안전교육의 이해
- 2 교통안전교육의 실제

2

교통안전교육의 실제

1. 교통 신호 및 교통안전 표지판

(1) 교통안전 표지판

① 지시표시

- 보행자 전용 도로 : 보행자(걷는 사람)를 위한 도로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
- 어린이 보호 :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의하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
- 자전거 전용 도로 : 자전거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

② 규제표시

- 보행자 횡단 금지 : 보행자(걷는 사람)의 횡단을 금지한 곳을 나타낸 표지
- 보행 금지 : 보행자 보행자(걷는 사람)가 다닐 수 없는 곳을 나타낸 표지
- 자전거 통행 금지 : 자전거를 타서는 안되는 곳을 나타낸 표지

③ 주의표시

- 위험 : 도로 교통상 각종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
- 공사 중 :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
- 철길 건널목 : 철도 건널목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

**중점 학습내용!**

- 1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의 이해
- 2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의 실제

1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의 이해

1. 개념 및 필요성

- (1) 현장체험학습의 정의 : 학습자가 보고, 느끼고, 듣는 직접적인 체험활동의 교육방법으로 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
- (2) 효용성
 - ①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 증진
 - ② 교육과정과 실생활의 연계를 통한 학습효과 증진
 - ③ 학교 밖 교육활동의 기회 제공
- (3) 목적 : 자율성, 책임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공동체 의식, 협동심 함양
- (4) 매뉴얼
 - ①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안내
 - ② 현장체험학습 차량 등 교통안전 정보제공 서비스 활용 안내
 - ③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 철저
 - ④ 전세버스 임차 계약 시 주의 사항 안내
 - ⑤ 수련활동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중점 학습내용!**

- 1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의 이해
- 2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의 실제

2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의 실제

1. 현장학습 전 준비사항

(1) 계획 수립

- ① 연간 보육계획 수립
- ② 영유아 건강 및 날씨 고려
- ③ 학부모 의견 수렴

(2) 부모 공지

- ① 문서로 공지하기(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대화수첩, 보육계획안 등)
- ② 동의서 받기(참여 유무, 부모 서명)

(3) 사전 답사

- ①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주위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답사를 실시
- ② 사전답사 시에는 영유아의 이동 동선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화장실, 의무실과 함께 인근 병원도 미리 확인
- ③ 확인사항
 - 실시경로·예정지와 교육목적 부합 여부
 - 거리, 소요시간 시설(식당 포함)의 수용인원 및 안전·위생 상태
 - 유해환경 인접 여부
 -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체크 항목 예시)
 - 답사 중 또는 답사 실시 전후에 관련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품·향응 기타 편의사항을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함

(4) 계획표 및 시간표 세부일정 작성

- ① 현장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표 작성
- ② 시간에 따른 교사역할 분장 작성



2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의 실제

- (5) 영유아 및 보육교사 안전교육 실시
- (6) 구조법 및 응급처치 요령 숙지
- (7) 물품 소지 : 영유아 명단, 비상약품, 비상연락처, 기타 물품(핸드폰, 호루라기, 일정표, 카메라, 물수건, 여벌 옷 등) 소지
- (8) 영유아 및 보육교사 복장 확인
 - ①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름표(유괴에 대비해 이름을 기재하지 않음)
 - ② 활동하기 편한 복장, 끈이 없고 신체 크기에 맞는 운동화 착용
- (9) 단체차량 이용 전 사고예방 대책
 - ① 계약 체결 시 차량안전 관련 사항 명시
 - 차량 연식, 보험 가입, 차량 상태, 운전자 자격 및 의무사항 등을 계약조건에 명시
 - 운송업체 계약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운전자 음주 금지조항 및 보상조항 명시
 - 계약 조건 위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 포함
 - 차량 운행 7일 전 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을 명시
 - ② 운행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확인 및 차량 점검
 - 전세버스 임차 계약 시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해 적격 여부 등 정보 조회를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요청(교통안전정보제공서비스 활용)
 -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치된 차량이 일치하는지 확인
 - 출발 전 조회 결과 회신 사항과 배차 계획을 대조하여 적격 여부 최종 확인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차량 등록원부 확인
 - ③ 운전자 음주측정 및 호송 요청 등 교통안전 대책 강구
 - 출발 당일 운전자 음주 측정 및 호송 협조 요청 등
 - 지방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부서에 공문 요청
- (10) 영유아 및 운전자 협조 요청
 - ① 영유아 차량 이용에 대한 안전약속
 - ② 운전자 정보 공개 및 안전운전에 대한 협조 요청
- (11)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확인

**중점 학습내용!**

- 1 건강영양교육의 이해
- 2 건강영양교육의 실제

1

건강영양교육의 이해

1. 건강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1) 필요성

- ① 행동발달을 통한 영유아들의 삶과 질을 유지 및 향상
- ②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것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스스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 ③ 아이에게 건강교육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보고 싶다면?
 -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습관이나 태도를 몸에 익히게 함
 - 여러 가지 운동에 흥미를 가지고 경험하도록 함
 -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습관이나 태도를 익히도록 함
- ④ 건강영양교육의 목표
 - 정상적인 신체발달 촉진
 - 적절한 수면과 휴식
 - 건강한 배설 능력과 패턴확립
 - 청결한 신체관리
 - 적절한 의복
 - 건강한 눈 관리
 - 건강한 치아 관리
 - 질병 예방
 - 쾌적한 환경 유지
 - 건강 진단을 통한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
- ⑤ 목표수행을 위한 방안
 - 보육교사 및 보육종사자와의 가치와 신념
 - 영유아 건강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중점 학습내용!**

- 1 건강영양교육의 이해
- 2 건강영양교육의 실제

2

건강영양교육의 실제

1. 영유아 발달단계별 영양관리

(1) 영아기

- ① 하루 평균 1,000~1,200kcal 필요
- ② 양·질적으로 2~3일 단위로 만족감 제시
- ③ 균형 잡힌 식사를 주간 단위로 제시
- ④ 소량의 식사와 식사 외 간식 섭취
- ⑤ 손가락 식사

(2) 유아기

- ① 가정과 보육기관 공동 영양관리
- ② 가정으로 식단을 보냄으로써 급식의 내용과 양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시
- ③ 음식 준비를 같이 함으로써 식습관지도 진행
- ④ 수월해진 식기 사용



2. 급식 관리

(1) 식단 및 영양

① 인원에 따른 취사부 기준

- 영유아 80인 초과시 1인 증원(방과후 제외)
-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 영양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순회를 계획하고 실행
- 원장이 영양사 자격이 있을 경우 겸직 가능
- 교사를 포함하여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집단급식소에 신고
- 40인 이상~80인 이하 : 취사부(조리원) 배치
- 50인 이상 : 조리사 배치
- 100명 미만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 제공
- 100명 이상 : 영양사 1인 배치

(2) 식단 관리

① 영양적 균형

- 급식
 -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균형 있게 충분한 양을 제공함
 -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방침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을 권장함
- 간식
 - 비타민, 무기질 등을 균형 있게 제공함
 - 과일, 채소를 주 3회 이상 제공함
 -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냉동식품과 과자류는 간식으로 제공하지 않음
 - 식사 시 후식으로 제공되는 과일은 간식에 포함하지 않음

② 식단표 작성 및 안내

③ 식단 기록



중점 학습내용!

- 1 CCTV 안전교육의 이해
- 2 CCTV 안전교육의 실제

1

CCTV 안전교육의 이해

1. 주요 용어

- (1) 폐쇄회로 텔레비전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2)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CCTV 관련 과태료

- (1)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 과태료 최고 300만 원 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점 학습내용!

- 1 CCTV 안전교육의 이해
- 2 CCTV 안전교육의 실제

2

CCTV 안전교육의 실제

1. CCTV 설치

(1) CCTV 설치조건

- ①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보육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하여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 ② CCTV는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
- ③ 보육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
- ④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안 됨
- ⑤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함
- ⑥ 저장장치는 영상정보를 CCTV의 화질 기준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춰야 함
- ⑦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⑧ 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내용을 준용

(2) CCTV 설치구역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다음 구역은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음
 -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주/부출입문)
 - 어린이집 내부의 계단과 계단 사이의 연결 공간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보안에 중요지역 및 중요실
- ② 관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가, 학부모, 교직원과 협의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음
- ③ 야간 녹화가 필요한 곳은 조명을 설치하거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음
-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2. CCTV 열람

(1) 열람이 가능한 경우

- ①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 제9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②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그 밖에 보육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2) 열람 방법

- ① '열람요청서' 제출
- ② CCTV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열람 대장을 작성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함
 -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중점 학습내용!**

- | | |
|---------------------|---------------|
| ① 통학차량 관리 및 통학노선 점검 | ④ 사고사례와 예방 수칙 |
| ② 승하차 안전 | |
| ③ 교통안전교육 기준 | |

1

통학차량 관리 및 통학노선 점검**1. 통학노선 점검****(1) 통학버스 주·정차 금지 장소****① 주·정차 금지 장소**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② 주차 금지 장소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

③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에서 5m 이내인 곳

**중점 학습내용!**

- 1 통학차량 관리 및 통학노선 점검
- 2 승하차 안전
- 3 교통안전교육 기준
- 4 사고사례와 예방 수칙

2

승하차 안전

1. 승하차 시 주의사항

(1) 운전자

- ①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② 통학차량에 승차한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하차한 영유아가 보도 또는 길가 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통학차량 출발

(2) 영유아 탑승 시

- ① 영유아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 장구 착용
 -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영유아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영유아집에 행정처분 부과
 -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 ② 영유아 몸무게에 적합하고 안전 테스트에 합격한 안전의자 장착하고 차량 운행 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3) 주변 도로환경

- ① 승하차 시 주변 도로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제거

(4) 동승자

- ① 영유아가 하차한 후 지체 없이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들의 승하차 상황 확인 및 담임교사에게 통보
 -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 중 무단결석 영유아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영유아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영유아가 남아 있는지 재확인
 - 운전자는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
- ② 동승자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 확인



(5) 영유아집 원장

- ①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를 준수
- ② 영유아집 통학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 효력여부(취소 또는 정지 등)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면허 운전자가 통학차량을 운전하지 않도록 관리
※ 매 반기별로 운전기사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확인

(6) 인솔교사 등 보호탑승자의 대처요령

- ① 부상자가 있는 지 신속히 파악하고 응급조치
- ② 학생들을 안전하게 하차시키고 보도나 도로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
- ③ 경찰공무원이나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고 인원파악 철저
- ④ 어린이집에 즉시 알리고 부모에게 통보

2. 통학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 대처 방법

(1) 승·하차할 때

- ① 승차 : 줄을 서서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여 자리에 앉도록 지도
- ② 자동차 사각지대에 대한 교육 실시 → 자동차의 앞뒤로 건너가지 않도록 지도
- ③ 통학버스 앞에서 뛰지 않도록 지도

(2) 출발 및 차내 안전

- ① 안전하게 승차한 후 차량 문을 닫기
- ② 통학버스로 이동 중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평소에 지도
- ③ 버스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도
- ④ 차창 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밀지 않도록 지도
- ⑤ 운행 종료 후에는 차 안 맨 뒷좌석까지 반드시 확인

(3) 하차할 때

- ①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하차할 수 있도록 준비
- ② 차문이 열린 후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는 지 버스 뒤쪽을 살피고 하차 지도
- ③ 보호탑승자가 먼저 내려 안전하게 하차시키고 인계
- ④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서서히 출발

**중점 학습내용!**

- 1 인성교육의 이해
- 2 영유아 교사의 역할 및 인성덕목

1

인성교육의 이해

1. 개념 및 필요성

(1) 필요성

① 발달 심리적 측면

- 발달 : 환경과 개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짐
- 인성은 경험에 따라 변화수준과 삶의 방향, 도덕적 행위의 질적 수준이 결정됨

② 개인적 측면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인간은 타인이 나를 존중해 줄 때 최대의 행복을 느낌
- 개인의 행복을 가꿔주는 기본이 되는 것들
 - 타인 존중, 예절과 질서 준수, 행복을 찾으려 하는 교육
 -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고 희로애락을 바르게 수용하기
 - 욕심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③ 사회적 측면

-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발전 →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 병리현상
 - 전통적인 가치 상실, 이기주의, 황금 만능주의, 공동체 의식 상실, 도덕성 상실

④ 사회적 측면

-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은 바른 인성과 뛰어난 창의력과 튼튼한 신체를 가진 사람



1

인성교육의 이해

2. 방향과 덕목

(1) 인성교육 방향 수립 시 고려할 사항

- ①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
- ② 전인교육에 충실
- ③ 일관성과 계속성 유지

(2) 교육부가 제시한 창의·인성교육 방향

- ① 개인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아 키워주는 교육이 핵심이자 미래교육의 본질이 되어야 함
- ② 모든 생활 장면에서부터 종합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자질교육이 되어야 함
- ③ 통합교육과정, 간학문적 교육과정, 문제 중심, 활동 중심, 탐구 중심의 자기 주도적 교육방법을 사용해야 함
- ④ 창의성 발휘와 표현을 돕는 문화와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함

(3) 영유아교사를 위한 8대 인성 덕목(인성교육진흥법에 기초)

- | | | |
|------|------|------|
| ① 예절 | ④ 책임 | ⑦ 소통 |
| ② 효도 | ⑤ 존중 | ⑧ 협동 |
| ③ 정직 | ⑥ 배려 | |

3. 인성교육 문제와 안전문제

(1) 인성교육의 실패 원인

- ① 성적·지식·결과·경쟁·시험 중심 입시교육
- ②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의식 부족
- ③ 교육과정체제의 문제-교육내용 과다 등으로 인성교육 시간 및 기회 부족
- ④ 인성교육에 대한 교수학습 전략 및 방법 부족

(2) 나아갈 방향

- ① 혼육적이고 지식 전달식의 인성교육에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유관 교과에서 인성교원 실시
 - 교과교육과 교과 외 교육을 통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중점 학습내용!**

- 1 영유아기의 인성
- 2 영유아 인성교육

1

영유아기의 인성

1. 영유아기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목적

- (1) 인성의 정의 : 인격(Character), 성격(Personality), 도덕(Morality), 인간본성, 인간본연, 인간다운 품성
- (2) 인성교육의 구성 : 가치교육, 도덕교육, 시민성교육, 인격교육
- (3) 인성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 4~5세 유아기
- (4) 영유아 인성교육의 목적
 - ① 자신에 대한 이해
 - ②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 ③ 더불어 살기 위한 능력 배양
- (5) 영유아 인성의 8대 덕목 : 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2.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배경 및 목적

- (1)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목적
 - ① 교육 과정 내실화를 통해 영유아 교육 정상화 도모
 - ②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 인식
 - ③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 상위 체계 인성교육 방향 설정에 기초 마련
 - ④ 교사 및 부모 역량 강화
- (2) 누리과정에서 인성교육 강조
 - ① 기본구성 방향 : 기본 생활 습관,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
 - ② 목적 : 기본능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고 민주시민의 기초 형성
 - ③ 목표 :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 형성